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기식 택시미터기 대신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기를 설치한 차량이 보편화됨에 따라 검정용 차량 요건에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기를 장착한 차량을 추가하는 한편,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기 사용검정 시 미터기 자체 성능 결함이 아닌 외부요인으로 부적합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GPS 수신환경, 할증요금 세부기준 부재 등의 요인으로 부적합이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“적합”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중 ‘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기준’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의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6.3.1 중 “표준통신규약(전기식미터)에”를 “표준통신규약(전기식미터, 앱미터)에”으로 한다.

6.6.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외부요인(GPS 수신 환경, 할증요금 세부기준 부재 등)으로 인해 부적합이라고 판단된 경우, 총 거리오차가 6.4.3에 따른 제작검정 및 수리검정 오차 범위 이내일 때 적합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6.3 제작검정 및 수리검정의 자기 인증 영업 조건	6.3 ----- -----
6.3.1 자기인증 영업에 사용할 자 동차는 TIMS <u>표준통신규약(전 기식미터)</u> 에 따라 TIMS 데이터 가 수집되고 있는 차량이어야 한 다.	6.3.1 ----- ----- <u>표준통신규</u> <u>약(전기식미터, 앰미터)</u> 에 ---- ----- ----.
6.6.2 검사용 영업데이터의 허용 차 검사를 6.2에 따라 실시하고 각 운임부과 시점에 부과된 운임 기준을 검사하고 그 부적합 비율 은 0.1% 이내여야 한다.	6.6.2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단, 외부요인</u> <u>(GPS 수신 환경, 할증요금 세부기준</u> <u>부재 등)으로 인해 부적합이라고</u> <u>판단된 경우, 총 거리오차가 6.4.</u> <u>3에 따른 제작검정 및 수리검정</u> <u>오차 범위 이내일 때 적합으로 분</u> <u>다.</u>